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8 선고 2017가단87730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 고 A

변론 종결 2018. 8. 21.

판결 선고 2018. 9.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908,6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7. 10. 26.까지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엔텔스와 C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에 따른 용역대가 지급보증으로 원고 발행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7. 5.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엔텔스, 보험가입금액 136,908,649원, 보험기간 2017. 5. 22.부터 2017. 9. 15.까지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이하 '이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의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6%이다.

다. 소외 회사가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9. 20. 주식회사 엔텔스에게 138,908,649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7. 8. 21.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7간회합100070)이 내려졌고, 원고는 2017. 11. 17. 회생법원에 회생담보권 17,281,428원, 회생채권 119,627,221원 합계 136,908,649원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이를 모두 시인하였다.

마. 원고의 채권액 136,908,649원은 소외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전액 반영되어 작성되었고, 위 회생계획안은 2017. 12. 5.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의 경우 시인된 채권액의 58%는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대상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36,908,649원과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9.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0. 26.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69,466,653원이 출자전환되어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채무 역시 위 금액만큼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가
회생회사인 때에는 그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인이 회생회사인 때에는 주채무자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참조).

주채무자인 회생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회생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회생회사의 기업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참조). 한편 비상장주식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인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 중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의 가치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현출된 자료만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순자산가치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소외 회사의 주식 가치는 순자산가치방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 119,770,092원 중 69,466,653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비상장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식 1,389주를 인수한 사실,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17. 12. 12.에 가까운 2017. 11. 30.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에 따르면 신주의 순자산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 출자전환으로 원고가 실질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구상금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